

##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

우수한 연구인력에 의한 중소기업 주도의 선순환적 혁신 강화를 위해 「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구직자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6월 05일  
연구인력 혁신센터장

### 1. 사업개요

가. (사업목적)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

나. (지원규모)

- (level 2) 예비연구자 양성과정: 100개사/ 100명 내외
- (level 3) 신진연구자 양성과정: 40개사/ 40명 내외

다. (지원내용)



- (level 1) 중소기업-연구인력 매칭: 연구인력 혁신센터는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을 모니터링 하고 중소기업과 연구인력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
- (level 2) 예비연구자 양성과정: 예비연구자(학사/석사/박사 학위예정자)에 대한 R&D인턴 업무 수행 및 R&D 프로젝트 발굴 필수

구분 (학위취득자 및 예정자)	정부지원금	지원기간	비고
학사	월 130만원	2~4개월	인턴 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(정부지원금+기업지급액=최저임금 이상)
석사	월 160만원	2개월	
박사	월 190만원		

- (level 3) 신진연구자 양성과정: level2 이수 완료 후 기업에 취업한 연구자의 R&D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통한 전문연구역량 향상

구분	정부지원금	지원기간	비고
자유공모	10백만원~12백만원	6개월 이내	연구인력 정규직 채용 필수 평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

- (후속단계) level3 단계를 마친 기업(연구자) 중 우수 기업(연구자)에 대해 중기부 연계사업\*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(최대 8개사)

\* 중소벤처기업부 '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'으로 기업별 1명,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% 지원

## 라. 지원대상

- (지원기업) 이·공계열 연구인력 채용수요가 있고,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가 설치된 중소기업\* 100개사  
\*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에서 발급한 인증서 보유 기업에 한함
- (연구인력) 이·공계열 학사/석사/박사 학위 취득(예정)자 및 미취업자 100명

## 마. 추진체계 및 절차

- (추진체계)



구분	역 할
중소벤처기업부	· 사업 총괄 기본 계획 수립 · 사업 예산 지원 · 사업 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연구개발과제 평가단)	·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계획 수립 · 사업 운영 총괄, 공고 및 선정 평가,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· 사업 성과 조사·분석 총괄, 사후 관리
주관연구개발기관 (연구인력혁신센터)	·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, 연구인력 수급현황조사 실시 · Level 1, 2, 3 기본 프로그램 운영 · 특화 프로그램(계약학과 연계, 연구장비 등) 운영

○ (추진절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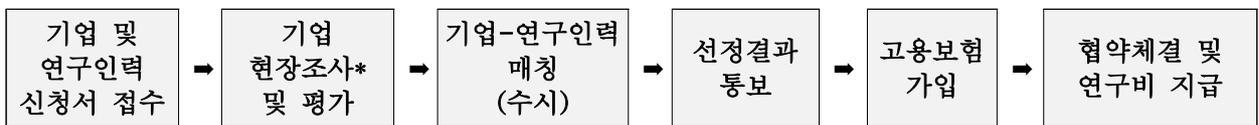


\* 신진연구자 양성과정은 예비연구자 양성과정에서 도출된 R&D 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40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

## 2.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### 가. 신청방법

- (신청·접수기간) ‘24. 6. 10(월) ~ ’ 24. 6. 28(금)까지
- (신청방법) e-mail 신청·접수(incrit@jbnu.ac.kr)
- (신청절차)



\* 현장조사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 생략 될 수 있음

### 나. [연구인력] 유의사항

- 신청기업 대표자,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
- 신청 마감일 기준, 현재 군 복무 중인 자(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포함) 또는 군 복무 예정자 신청 불가

-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신청 불가

**다. [신청기업] 유의사항**

-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 및 고용 계약 완료필요
-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
- 타 지원사업의 인건비 현금 참여금지\* 의무(중복지원방지)
  - \* Level 2의 경우 현금성 타 지원사업 참여 금지, Level 3의 경우 현금성 타 지원사업 40%이상 참여 금지
-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 함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기관, 기업, 인력, 대표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
-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임
- 지원기간 및 지원 종료 후 5년간 사업의 성과조사·분석에 대한 응답필수 임
-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,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된 기업은 상시 비치서류의 관리 의무를 가짐

① 협약서	⑧ 지원인력 최종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② 신청서 및 관련제출 서류	⑨ 연구성과 보고서
③ 지원금 지급요청서 및 서약서	⑩ 지원금 정산보고서
④ 지원인력에 대한 월별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	⑪ 지원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
⑤ 지원인력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 입금증 사본	⑫ 지원인력의 근태관리 관리서류
⑥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용계좌 사본	⑬ 기타 양성지원 사업 관련서류
⑦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사본	

- 본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」,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,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(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)」, 「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관리지침」에 따름

## 라. 신청서류

연번	서 식 명	제출자		제출방법
		기업	연구인력	
①	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기업 신청서	○		붙임1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(한글파일 제출 必)
	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연구인력 지원서		○	
②	신청기업의 최근 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*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* 설립 3년 미만기업(사업접수 마감일 기준)은 미제출 가능	○		이메일 제출
③	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	○		
④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* 인정서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가능	○		
⑤	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○	○	붙임2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
⑥	학위 증명서(졸업증명서) 또는 재학 증명서 * 졸업 예정자(4학년 2학기 이상)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가능		○	이메일 제출
⑦	경력 증명서(해당 시)		○	
⑧	자격증(해당 시)		○	

### 3. Level3 R&D 프로젝트 지원제외 사항

- ◇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·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◇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\* 참조  
\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에서 확인가능
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③ 기(既) 개발/기(既) 지원 여부
 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  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  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구 분	확인방법
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정부 R&amp;D 기 지원 이력 확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→ 사업과제 → 세부과제 → 세부과제검색</li> </ul> </li> <li>◇ 중소벤처기업부 R&amp;D 기 지원 이력 확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 → 정보마당 → 지원과제 →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</li> </ul> </li> </ul>

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 - \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구 분	확인방법
의무사항 불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 과제수행 → 제재조회 → 중기 R&amp;D사업 제재조회</li> </ul>

⑤ 참여제한 여부

-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, 지원기업, 지원인력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구 분	확인방법
참여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 과제신청 → 과제신청 안내 → STEP1/사전준비사항 → 참여제한 확인</li> <li>•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</li> </ul>

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,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\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㉠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
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- \* 단,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\* 단,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,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㉕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**< 관련 문의처 >**

☞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

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
☞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보증

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, ☎02-3211-5609)

⑦ 신청(또는 현장조사)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\* 단,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만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(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)까지 제출유예 가능

⑧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

\* 단,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’ 를 제출 후 인정받은 경우 예외

**5. 문의처**

구 분		기관명(부서명)	연락처
사업 운영기관	연구인력 혁신센터	전북대학교	(063) 270-3656, 3921
		연구인력 혁신센터	(063) 219-5399
전문기관	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지역협력사업실)	(044) 300-0842